

##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0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년 11월 일  
제출자 : 제천시장

### 1. 제안이유

「통합방위법」의 개정과 「통합방위지침」의 개정에 의하여 현행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도 협의회 심의사항 '취약지역 대비책' 삭제 (안 제2조, 제5조)
- 협의회 위원(소방서장) 및 간사(경찰담당) 신규 삽입 (안 제3조)
- 읍면동 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(안 제4조)
- 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(안 제6조)

### 3. 의안전문 : 볼 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볼 임

### 5. 관계법령 : 볼 임

- 첨부 1. 관계법령 1부.  
2. 입법예고 사본 1부  
3.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1부

##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”를 “제천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통합방위법”을 “「통합방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.

협의회는 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8. 소방서장

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작전담당간사 : 3대대 작전장교

3. 경찰담당간사 : 제천경찰서 업무담당

제4조제1항 중 “구성하되,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.”를 “구성하여 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사무와 협의회 의장이 정한 사무를 분장하며 시 지원본부장은 부시장, 읍·면·동의 본부장은 읍·면·동장이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분야별 지원반은 다음과 같다.

1. 시 : 총괄지원반, 인력·재정동원지원반, 산업·수송·장비동원지원반, 의료·구호지원반, 통신·전산지원반, 보급·급식지원반, 홍보지원반

2. 읍·면·동 : 총괄지원반, 보급·재정지원반, 통신·의료·구호지원반, 동원지원반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2~3개반으로 편성

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팀장급·담당급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하며 시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인 내지 9인으로, 읍면동은 2인 내지 3인으로 구성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제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2. 위원은 협의회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.

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
2.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
3.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

③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	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, 제9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 및 제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"지원본부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<b>제1조(목적)</b> 「통합방위법」 --
<b>제2조(협의회의 심의사항)</b> 법 제5조 제3항 제5호에서 "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<b>제2조(협의회 심의사항)</b> 협의회는 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취약지역 대비책 2. ~ 3. (생략)	<b>&lt;삭제&gt;</b> 2. ~ 3. (현행과 같음)
<b>제3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</b> ① ~ ② (생략) 1. ~ 7. (생략) <b>&lt;신설&gt;</b> 8.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(생략) 1. (생략) 2. <u>작전담당간사 : 작전장교</u> <b>&lt;신설&gt;</b>	<b>제3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</b>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1. ~ 7. (현행과 같음) <b>8. 소방서장</b> 9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작전담당간사 : 3대대 작전장교</u> 3. <u>경찰담당간사 : 제천경찰서 업무담당</u>
<b>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b> ① -----  -----구성하여,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.	<b>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</b> ① -----  -----구성하여 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사무와 협의회 의장이 정한 사무를 분장하며 시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, 읍면동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분야별 지원반은 다음과 같다.</u> 1. 시 : 총괄지원반, 인력 · 재정동원 지원반, 산업 · 수송 · 장비동원 지원반, 의료 · 구호지원반, 통신 · 전산지원반, 보급 · 급식지원반, 홍보지원반

현 행	개 정 안
<p>④ <u>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팀장급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<b>제5조(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)</b></p> <p>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</li> <li>나.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</li> <li>다.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</li> <li>라. 관계기관의 협의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</li> <li>마.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</li> <li>바.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의료·봉사활동의 실시</li> </ol> </li> <li>2.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10년생 이상의 잎목</li> <li>나. 모래병커 또는 연못</li> <li>다. 이동식 장애물(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)</li> <li>라.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·문화시설 등의 구조물</li> </ol> </li> <li>3.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폐류 양식장의 설치</li> <li>나.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</li> </ol> </li> </ol>	<p>2. 읍·면·동 : 총괄지원반, 보급·재정지원반, 통신·의료·구호지원반, 동원지원반을 자체설정에 맞게 조정하여 2~3개반으로 편성</p> <p>④ <u>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팀장급·담당급공무원 또는 기관·단체의 대표자로 하며 시자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인내지 9인으로, 읍면동은 2인내지 3인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&lt;삭제&gt;</b></p>

현 행	기 정 인
<b>&lt;신설&gt;</b>	<p><b>제6조(제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)</b>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</p> <p>2. 위원은 협의회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</p> <p>1.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</p> <p>2.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</p> <p>3.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</p> <p>③ 실무위원회는 분기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

## 관 계 법령

### 통합방위법

[일부개정 2006. 3. 3 법률 제7853호 ]

- 제5조(지역통합방위협의회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소속하에 특별시·광역시·도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시·도협의회"라 한다)를 두되, 그 의장은 시·도지사가 된다.  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, 그 의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  
③ 시·도 협의회와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·도협의회에 한한다.

1.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(아하 "취약지역"이라 한다)의 선정 또는 해제
2. 통합방위대비책
3.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
4. 통합방위작전·훈련의 지원대책
5.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용 및 지원대책

- 제7조(협의회의 통합·운영)** 중앙협의회·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
1.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
2. 「민방위기본법」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

- 제9조(통합방위지원본부)** ①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·군수·구청장·읍장·면장·동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.

- ② 시·도 통합방위지원본부와 시·군·구·읍·면·동 통합방위지원본부(이하 "각 통합방위지원본부"라 한다)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

**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**

1.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
2.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
3. 국가방위요소의 육성·지원
4.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
5.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

**제17조 (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)**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·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교통·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 또는 벽지
2. 간첩 및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의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
3. 적의 저공(저공) 침투 또는 저속 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개활지(개활지) 또는 호수
4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2 이상의 시·도에 걸쳐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정 또는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(강안)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6.3.3]

**통합방위법 시행령**  
**(일부개정 2006. 5. 30 대통령령 제19490호 )**

**제7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** ①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

1.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2. 당해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3. 국가정보원 관계자
4. 지방검찰청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5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6.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파출소장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8. 지방병무관서의 장
9. 교육감 또는 교육장
10. 지방의회의장
11. 지방소방관서의 장
12.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

②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,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(이하 "지역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
2.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
3.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·조정

④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.

**제13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)** 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
2.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
3. 지역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의 시행

**제14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)** ①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, 인력·재정동원, 산업·수송·장비동원, 의료·구호, 보급·급식, 통신·전산,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,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.

③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, 읍·면·동의 경우에는 읍장·면장·동장이 되도록 한다.

④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는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·읍·면·동의 주 사무소 내에 두도록 한다.

**제17조(통합방위사태의 운영 기준)** ①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시 운영한다.

② 합동상황실은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당해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.

③ 기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.

### 통합방위지침

(일부개정 2007. 4. 15 대통령훈령 제28호 )

#### 제32조(통합방위지원본부)

②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은 법 제9조와 영 제13조, 14조 및 17조에 의거 조례로 정한다.

1. 시·도 및 시·군·구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7개반으로 편성 운용한다.
2. 읍·면·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각 행정구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2~4개반으로 편성한다.(부록#4 참조)

###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

(일부개정 2007. 4. 15 대통령훈령 제28호 )

#### 제5조(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조례 기준) ①법 제5조제1항, 제2항에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시·도협의회”라 한다)와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“시·군·구협의회”라 한다)의 조례제정 기준은 영 제7조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한다.

##### 2. 시·군·구 협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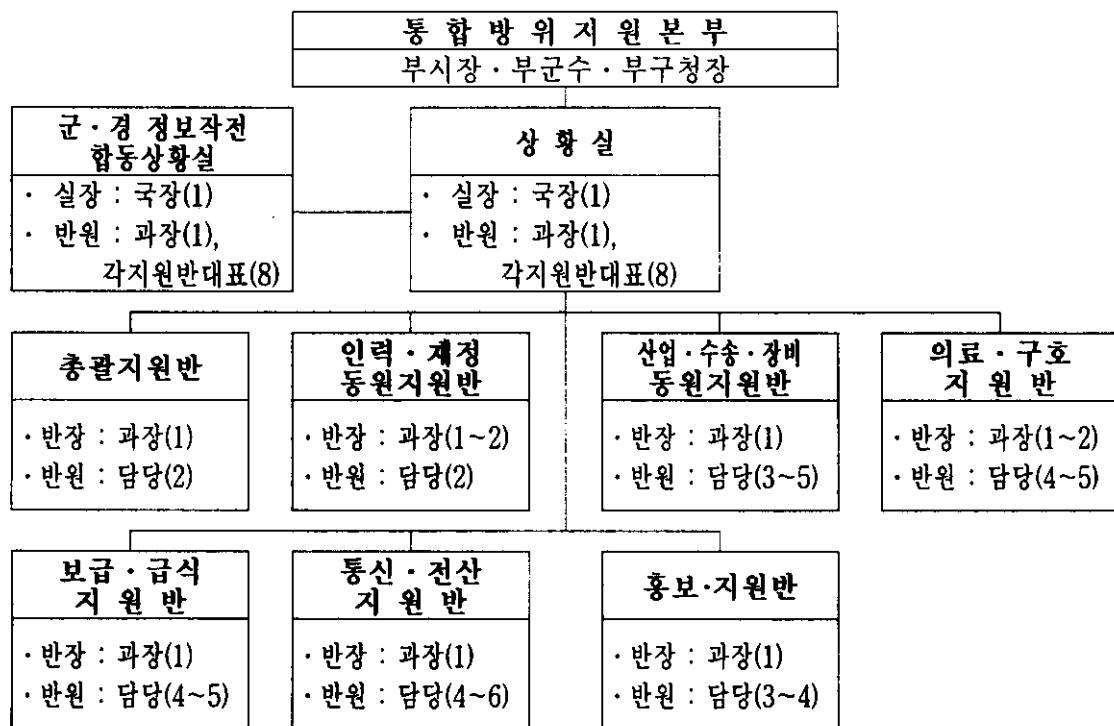
가. 협의회 내에 작전, 예비군, 경찰, 총무, 민방위 담당간사를 둔다.

#### 제6조(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조례 기준) ①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통합방위실무위원회(이하 “지역실무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례제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1. 지역실무위원회 의장은 부자치단체장으로 한다.
2. 위원은 지역협의회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.

[부록#4]

## □ 시·군·구 통합방위지원본부 : 7개반



## □ 읍·면·동 통합방위지원본부 :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고려 2~4개반 운용

통합방위지원본부 읍·면·동장			
구분	읍 통합방위지원본부	면 통합방위지원본부	동 통합방위지원본부
지원반 편성	① 총괄지원반(3~4) ② 보급/재정지원반(2~3) ③ 동원지원반(3~4) ④ 통신/의료/구호지원반(2~3)	① 총괄지원반(2~3) ② 동원지원반(3~4) ③ 통신/의료/구호지원반 (2~3)	① 총괄지원반(2~3) ② 동원지원반(2~3)

- 1)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/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
- 2) 전시 정부기능업무 (주민통제, 배급, 민방위대 통제 등) 병행

제천시 공고 2007 - 1284호

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07. 10. 1.

제 천 시 장

**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**1. 조례명 : 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**2. 개정이유**

- 「통합방위법」의 개정(법률 제7853호 2006. 3. 3)과 「통합방위지침」의 개정(대통령훈령 제28호 2007. 4. 15)에 의하여
- 「제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를 완벽히 하기 위함

**3. 주요내용**

- 도 협의회 심의사항 “취약지역 대비책” 삭제 (안 제2조, 제5조)
- 협의회 위원(소방서장) 및 간사(경찰담당) 신규 조정 (안 제3조)
- 읍면동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(안 제4조)
- 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(안 제6조)

**4. 의견서 제출**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월21일까지 제천시장(참조 재난관리팀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: ☎ 641-5652, FAX 641-5659, E-mail : kyc8273@okjc.net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이유)
 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 - 기타 참고사항 등

##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

### [입법예고 개요]

- 예고기간 : 2007. 10. 1~10. 21
- 예고방법 : 시보(제662호), 시홈페이지(입법예고)

### [의견 제출자]

- 제출자 : 제천경찰서 경비계장 박윤록
- 제출방법 : 전화통보
- 의견내용 : 제3조제3항제3호(신설)의 '제천경찰서 담당과장'을 '제천경찰서 업무담당'으로 정정 요청

### [조치내용]

-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(대통령훈령 제28호) 제5조제1항제2호가목(시·군·구 협의회)에서 '시·군·구 협의회내에 작전, 예비군, 경찰, 총무, 민방위담당간사를 둔다.'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
- 의견제출내용과 같이 직위를 배제하고 '제천경찰서 업무담당'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여 수용 함.